

## 未完成發明의論理

—木材細片 送出筒의例—

어느 日人이 日本特許廳에 深山幽谷이나 그 밖의 木材等 纖維植物이 生育하는 現場에서 採取한 Chip原料를 곧 細片化한 것을 地勢流水, 風力, 水力を 利用하여 送出筒으로 工場등 需要基地까지 完全正確, 그리고 迅速히 輸送한다는 方法特許를 出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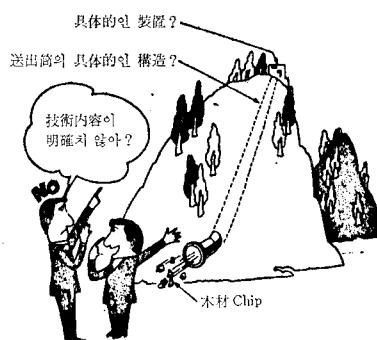
山에서 伐採된 목재등을 공장등에 수송하려면 많은 努力이 들게 되므로 이 노력을 줄이는 發明으로서 목재를 세평화 하여 중력이나 수력으로 송출통에 의해 수송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출원에는 목재등의 채취현장에서 공장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송출통을敷設하느냐 하는 具體的인 橫造와 중력과 수력을 이용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용방법등의 技術的內容이 明確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特許廳審查過程에서 이 발명은 特許出願前에 固體粒子펄프에 의한 遠距離輸送裝置의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指摘되었다. 다시 말해서 公知技術이므로 關係業者라면 容易하게 考察할 수 있다하여 審查官이 拒絕하였다.

특허 출원전에 發刊된 特許公報에 輸送管을 통하여 고체입자를 送水 속에 섞어서 원거리까지 수송하는 기술이 揭載된 바 있다.

그러나 出願人은 이 발명은 공보



에 실린 수송방법을 사용하여 山中の 목재를 수송하려는 原理이기는 하나 이제까지의 기술을 더욱 發展시킨것이므로 특허의 價值가充分하다고 主張하여 1963年(行나)34號로 東京高等法院에 提訴하였다.

이에 대해 1966年 3月 10日 同高法은 『結局 本願에서原告(출원인)의 國土保全과 能率의 增進을目標로 하고 木材經濟의 新產業에 貢獻하려는 意圖와 熱意는 納得할 수 있으나 그 意圖를 達成시키기 위한 장치로서는 그 明細書에서 험준한 山岳斷崖溪谷등의 奧地에 있는 植物의 未利用材를 急速하고 最高度로 채취하여 각자 현장에서 細片한 것을 水源의 保安保水能力의 助勢를 配慮하여 대체로 地勢流水에 따라 山판을 망가치지 않게끔 부설한 송출통에 의하여 新鮮한 것을 完全正確하고 신속히 直送하는 장치라

고 記載하였을 뿐이므로 거의 그 希望을 抽象적으로 表現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장치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거의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명세서의 기재와 前記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로는 前認定特許에 比較하면 수력이용의 송출통에 의한 chip 수송장치를 推測한데 不過하므로 결국 본원은 전기의 引用例에 이미 용이하게 實施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同一 또는 均等한 것으로서 그 登錄을 거절당해도 하는 수 없다고 할수 밖에 없다. .....인용례에 기재된 것과 相違한 것으로 주장되어 있는 것이 抽象적으로는理解할 수 있어도 아직 구체적인 技術思想으로서 把握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에는 오히려 端的으로 말해서 發明未完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용례에 表示되어 있는 기술사상과 別個의 具體的的思想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 발명은 인용례의 기술사상과 동일 또는 均等의範圍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判決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발명은 특허될 수 없으며 발명이 구체적인 기술로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發明未完成일뿐 아니라 공지기술의 領域을 벗지 못한다는 論理이다.

發明은 財產이다 特許로 保護하자!